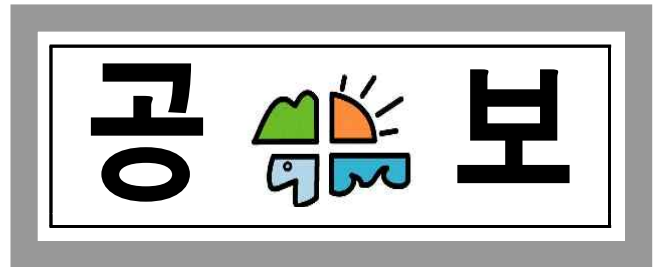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13호 2021년 3월 5일(금)

조 례

-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속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7
-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9
- 속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입법예고

-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
-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
-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17호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속초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의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및 개인

2. 산불방지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18호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농공단지”를 “농공단지 등”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그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업 종 구 분 표

업종별	업 종 별	비 고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 연탄 · 양곡 · 문방구 · 지물 · 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미만의 업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 강원도 백년기업 인증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 강원도 및 속초시 명장 선정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19호

속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반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임종을 앞둔 시민이 인간성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명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20호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 등을 연계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잇길”이란 시민 및 관광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속초시의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 등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속초시 관내에 지정·조성한 ‘길’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잇길을 걷고 체험할 수 있도록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 등은 사잇길을 이용함에 있어 사잇길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원칙) 사잇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길(인도, 마을길, 숲길 제방길 등)을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하고,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조성한다.
3. 친환경적으로 조성·관리 운영한다.
4. 사잇길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 민간단체, 걷기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5조(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 종합계획) ① 시장은 사잇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잇길 조성·관리·운영 기본 방향
2. 새로운 코스의 개발 및 코스의 보완
3.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
4.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대책
5. 동네 문화와 상권 연계 방안
6. 홍보 및 교육사업
7. 걷기 행사 및 축제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8.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사잇길 보호 및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사잇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따른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잇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사잇길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과 활성화사업 수행, 협력체계 구축 등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전문인력, 관광업자,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21호

속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본이념)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는 환경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일조(日照) 등”을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을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으로, “일조방해 등”을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로, “수립하여 시행 할”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처리”를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지구환경보전”을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업자”를 “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속초시환경보전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라 속초시환경보전계획”으로, “매 5년마다 수립”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민, 속초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사회단체”를 “시민 및 환경단체”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환경행정 발전과 민간의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또는 환경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사업
2.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 자원을 촉진하거나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환경보전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그 밖에 환경오염을 신고하는 등 환경보전에 공헌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제1항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속초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속초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속초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 제목 “(구성·임기)”를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5인”을 “1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를 “구성하며”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속초시의회 의원

3.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중전의 제18조) 중 “위원회의”를 “회의에 참석한”으로, “「속초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는”을 각각 “시장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는”을 각각 “시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3. 5.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가 2020.11.06.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상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에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5.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 연락처 : 전화(033-639-2166), 팩스(033-631-4208), 전자문서(syr02036@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차량관리팀(033-639-21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행료를”을 “통행료 전액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필하고”를 “마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통행료 지원) ① 속초시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u>통행료를</u>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통행료 지원) ① ----- ----- ----- ----- <u>통행료 전액</u> 을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대상) ①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u>필하고</u>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지원 대상) ① ----- --- <u>마치고</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3. 5.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와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칙인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상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에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4조의1)
- 나. 통행료 손실보상금에 대한 시의 부담금 납기일자를 15일에서 30일로 개정(안 제4조의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5.까

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 연락처 : 전화(033-639-2166), 팩스(033-631-4208), 전자문서(syr02036@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차량관리팀(033-639-21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규칙 제 호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규칙안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상요금의 50퍼센트”를 “정상요금 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행료 지원) ① 통행료 지원 금액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u>정상요금</u> <u>의 50퍼센트</u> 로 한다.	제4조(통행료 지원) ① ----- ----- ----- <u>정상요금 전액</u> ----- -----.
② 매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 에 대한 시의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1,4,7,10월) <u>15일</u> 까지 도 금고 로 납입한다.	② ----- ----- -- <u>30일</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항목 지정 등 재활용품 품목 조정 및 배출요령을 현행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 품목에 무색 투명페트병 별도 항목으로 추가(안 제14조, 별표 4)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2) 문의 : 전화(033-639-3774), 팩스(033-639-238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33-639-37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4조 관련)

종류	품목	배출요령
1. 종이류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과자포장, 상자, 기타골판지상자 등)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수 · 식용유) ◦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걸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등(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3. 병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농약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제거할 것 ·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플라스틱류	◦ 페트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스티로폼 ◦ 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봉투 등에 넣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어 배출 ※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표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